
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정비방안 연구

한국법제연구원

현행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의 적용을 받고 있는 “액화석유가스” 관련조항을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으로 포함시켜 가스법을 일원화·통일화·체계화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라는 가스체의 법적 위상 정립과 국가 가스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을 도모를 위한 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. 관련내용을 게재한다.

1. 연구의 목적 및 방법

(1) 연구의 필요성

- 현행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은 충전사업, 판매사업 등 소매단계를 중심으로 사업의 허가 및 기준(제3조 및 제4조 등), 저장소의 설치허가(제6조), 안전관리규정(제12조),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유지(제25조) 및 품질검사(제26조) 등을 규정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공급·사용을 도모하고 있음
- 그러나 현행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 제2조 제2호에서는 “가스”를 석유제품으로 분류하여 동법에 따른 석유사업(정제업·수출입업·판매업의 허가 등, 제5조~제14조), 석유비축(제15조~제17조), 석유수입 및 판매부과금(제18조~제20조),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(제21조~제23조), 석유의 품질관리(제24조~제30조) 등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“가스체”를 핵심으로 하는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과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
(참고) 2007년 12월 동일한 가스체인 LNG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으로부터 관련조항을 분류하여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포함시킴

- 또한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은 충전사업, 집단공급사업, 판매사업 등의 사업에 관한 허가를 하나의 허가조항(제3조)에서 규정함과 동시에 사업의 허가 및 취소, 안전의 관리 및 유지, 품질의 관리 및 검사, 가스용품 등을 장 또는 절의 구별 없이 규정하는 등 법체계적 결합을 내재하고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

(2) 연구의 목적

-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의 적용을 받고 있는 “액화석유가스” 관련조항을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으로 포함시켜 가스법을 일원화·통일화·체계화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라는 가스체의 법적 위상을 정립함과 동시에 법률 간의 상충문제을 해소하고, 나아가 국가 가스정책의 효율적 수립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

(3) 연구의 방법

□ 실태조사연구

- 중요 액화석유가스 관련업체의 방문 및 종사자와의 면접조사 실시
- 액화석유가스 관련사업의 상황 및 운영실태 파악

□ 문헌조사연구

- 액화석유가스 관련 연구성과의 적극적 활용
- 입법적 지원의 필요성·타당성에 관한 법리적 분석
- 관련법제의 분석을 통한 정책내용의 법제도화 필요성 제고
- 관련법제에 대한 조사·연구를 통한 법리적 내용 확립
- 관련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 검토

□ 비교법제연구

- 일본 등 주요 외국의 법제적 동향 파악
 - 일본방문을 통하여 가스체어너지화 추진동향 및 자료수집

- 각 국가의 제도 및 입법례 조사·분석

2. 연구의 주요내용

□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의 일원화·통일화

-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등에 산재되어 있는 아래의 관련조항을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으로 편입하여 일원화·통일화
- LPG 수출입 등록 관련 조항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9조)
- LPG 비축의무(제17조)
- 안전관리부담금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4조의 2) 등
- LPG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」 제3조)
- 기타 액화석유가스법의 일원화·통일화에 필요한 규정
- 이러한 조항들이 편입됨으로써 법률명, 목적조항, 인용조항, 의제조항 등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면서 내용적 연계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

□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의 전체적 체계정비

- 현행 법은 제1조에서 제52조(부칙 제외)까지 총 5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, 장 및 절 등 편제 상 체계적 정합성이 불충분하여 법령을 해석·집행함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
- 총 칙, 각종 사업 및 시설의 허가 등에 관한 장, 안전관리에 관한 장, 수출입업에 관한 장, 사업자단체에 관한 장, 보칙 및 벌칙에 관한 장 등으로 구별하여 규정함으로써 액화석유 가스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, 법령의 해석·집행의 효율성·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

□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의 내용적 정비

- LPG 충전소 허가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시도에게도 부여(제3조 제1항 개정)
 -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- LPG 품질검사 위반업체에 대한 공표의 법적 근거 마련(신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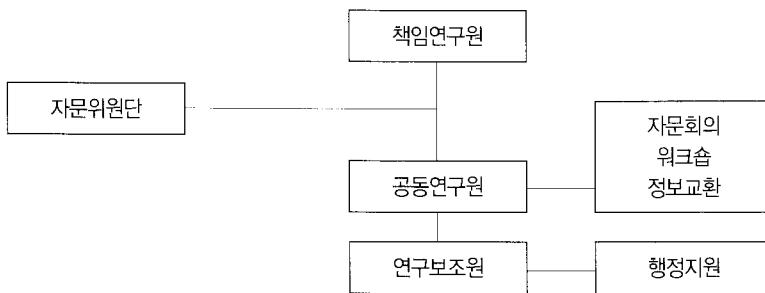
- LPG 부탄(자용차용)의 경우, 프로판 함유에 따른 연비차이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고, 위반업체 공표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
- 현재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5조 제7항에서는 품질검사 위반업체의 공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
- LPG 충전소 및 판매소의 판매가격 보고의무화(신설)
 -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판매소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고, 지식경제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함
- LPG 연료사용제한 조항의 명확화(보완)
 -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계층이 명료하지 않아 민원 과다발생
- 기타 협의에 기초하여 내용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3. 연구의 추진전략 및 일정

(1) 연구의 추진전략

- 외국법 전문가 및 자료의 효율적 활용
 -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연구센터 전문가 활용
 - RFID(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)시스템을 구비한 체계화된 자료실의 국내·외 자료의 즉시적 활용(장서 : 34,059권, 정기간행물 : 215종)
- 전문가회의 등을 통한 연구결과의 품질 제고
 - 실무 및 이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활용을 통한 맞춤형 법(안)내용의 확립
 - 과제수행의 필요에 대응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관련법제의 현황과 동향을 수시적으로 반영
-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활용
 -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와의 축적된 유기적 관계를 활용하여 입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
 - 외국의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협력관계를 통한 제도 및 입법례 조사·분석의 다양성 확보

(2) 연구의 추진체계



(3) 연구의 추진일정(09.4.1~8.31, 5개월)

세부과업별	기간					
	제1월	제2월	제3월	제4월	제5월	
-현행법제 실태조사	4.21					
-현행법제 한계도출						
-워킹그룹 검토회의		5.3				
-자문회의						
-개정초안 작성						
-가능한 조안제출						
-중간보고			6.19			
-워킹그룹 검토회의						
-일본출장 자료수집						
-개정초안 수정검토						
-자문회의				7.31		
-개정초안 최종확정						
-입법설명자료 작성						
-최종보고					8.31	
-최종보고서 납품						
	일별	10%	30%	30%	20%	10%
공정율(%)	누계	10%	40%	70%	90%	100%

4. 연구결과의 기대효과

- 국가의 효율적 가스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제공
- 액화석유가스사업의 법제도적 기반구축을 통한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